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99 발의연월일: 2023. 8. 8.

발 의 자:김철민·서동용·박 정

민형배 • 이병훈 • 이정문

윤후덕 • 도종환 • 고영인

안민석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와 함께 교원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사 레가 발생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 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생활지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 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은 학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에 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제지하거나 격리할 수

있다.

-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4항에 따른 교원의 제지 또는 격리 조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u>학생생활지도</u>) (생 략)	<u>학생생활지도 등</u>)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u>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u>
	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u>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u>
	<u>다.</u>
	<u>1. 학업 및 진로</u>
	<u>2. 보건 및 안전</u>
	<u>3. 인성 및 대인관계</u>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
	<u>는 분야</u>
<u><신 설></u>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u>다.</u>
<u><신 설></u>	④ 교원은 학생이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

<신 설>

<신 설>

생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제지하거나 격리할 수 있다.

-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4항에 따른 교원의 제지 또는 격리 조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행위로보지 아니한다.